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2. 1.



박 정 환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
조례 폐지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박 정 환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(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)을 가지게 됨에 따라,
- 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근거규정인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구 광역시달서구 의회의장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월 26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이 삭제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,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(박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822017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1. 26.

발의자: 박정환, 김화덕, 김태형, 이성순,
배지훈, 이신자, 김귀화, 조복희,
홍복조

1. 폐지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
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
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」를
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폐지조례안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
2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」

다. 비용추계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장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천대상 등) ①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고 한다)의 추천대상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(이하 “의회사무국”이라 한다) 사무직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.

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3조(추천요청)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승진규모 등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료의 요구 및 제출)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자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)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.
1.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·직급에 적합한 구 소속 공무원

2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
3. 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인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

제6조(서면 통보 등) ①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들어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했다는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